

주민 맞춤형 AI교육, 「서초 AI 아카데미」 운영을 위한 서울교대·전자신문·이티에듀(주)·서초구 업무협약서

서울특별시 서초구, 서울교육대학교, 전자신문사, 이티에듀(주)(이하 “4개 기관”이라 한다)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, ‘서초 AI 아카데미’ 교육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하여 민·관·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뜻을 함께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[목적]

본 협약은 4개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AI 시대에 적합한 ‘서초 AI 아카데미’ 교육 모델을 개발·운영하고, 이를 통해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기본원칙]

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고,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
제3조 [협약의 범위]

4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고,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한다.

1. 서초구는 ‘서초 AI 아카데미’ 교육 사업 계약 추진·운영 및 구 홈페이지, 소식지 등에 홍보를 실시한다.
2. 서울교육대학교는 교수진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며, 교육 공간 활용을 협력한다.
3. 전자신문사는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성과에 대한 홍보를 수행한다.
4. 이티에듀(주)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, 우수 강사진 배치 등 체계적으로 교육을 운영한다.

제4조 [협의조정]

협력사항의 세부 내용과 조건은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며, 협약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협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4개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제5조 [협약의 유효기간 및 해지]

1. 본 협약은 4개 기관이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필요 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속 유지할 수 있다.
2. 협약 목적이 달성되었거나, 본 협약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개 기관은 사전 협의 후 서면 통보(1개월 전)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 [정보보안 및 비밀유지]

1. 4개 기관은 취득한 정보를 협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, 그 외 용도로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.
2.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며,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상호 협력하여 이행한다.

제7조 [협약서 보관]

본 협약서는 4부를 작성하여 서명·날인 후,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7월 23일

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장신호

장신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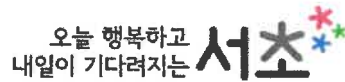
전자신문사
대표이사 강병준

강병준



이티에듀(주)
대표이사 신혜권

신혜권



서울특별시 서초구
구청장 전성수

전성수